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776
----------	------

발의연월일: 2021. 5. 14.

발 의 자: 장 경 희 의원

1. 제정이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기준 (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신청 (안 제5조)

라. 지원대상 확인 등 (안 제6조)

마.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의 환수 조치 (안 제7조, 제8조)

바. 협조요청 및 대장비치 (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5. 19. ~ 5. 23.) : 접수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산후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후건강관리비용”이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바우처 대상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부담한 본인 부담금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조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위하여 발급하는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6.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모(母)가 신청일까지 계속 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가정의 산모

2. 쌍생아 이상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3. 미혼모 산모

4.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중 산모

8.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제4조(지원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산모가 산후건강관리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로 한다. 다만,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중 단축형과 표준형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신청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은 산후건강관리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②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금 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및 지원금 대장을 각각 비치 ·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광진구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개인정보화일(DB) 수집의 목적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제공기관을 통한 지원 여부 확인 시 활용
 -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 보건소 타 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개인정보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출생아의 출생 관련 현황, 가족관계, 통장사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 5년
- 개인정보 조회·열람·활용 동의내용
 - 주민등록 등(초)본 조회·열람(세대원수, 출생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및 가족수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및 고지금액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황 확인)
 -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이 타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가족관계 확인 및 선정기준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신청이 제한됩니다. 거부함.

본인은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

1. 비용발생 요인

가. 개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관계법령

법령	주요내용
모자보건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조사, 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모가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가정의 산모
2. 쌍생아 이상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3. 미혼모 산모
4.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중 산모

나. 전제

- 지원기준 :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로 한다.
-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중 단축형과 표준형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600명	540명	490명	440명	440명

*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출생아수 11.9% 감소

(단위: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217,230	195,723	177,993	160,263	160,263	911,472